

유럽의 시민권,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인종주의: 국민국가의 전환과 극우민족주의*

홍태영 | 국방대학교

현재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쟁점 중에서 이 글은 유럽이라는 정체성, 유럽시민권 그리고 그 기저의 존재하는 문화적 인종주의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쟁점들은 두 개의 층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의 정체성, 시민권의 문제이지만 그 문제들은 국민국가 수준에서 쟁점이 되면서 동시에 유럽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현실화되는 방식은 시민권이지만 그 기저에는 유럽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며 또한 기저에 흐르는 문화적 인종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국가 수준의 민주주의가 유럽적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과도 결부된다. 아직까지 시민권이 주권의 배타적 권한이며, 유럽은 그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있을지라도 어떠한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정책의 문제는 결국 개별 국민국가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시민권의 부여는 고유한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유럽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개별 국가들 간의 차이를 조율하고 있지만, 방향성은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합의 속에서이다. 그러하다면 유럽시민권의 문제는 단순히 기존 국민국가 시기의 시민권의 연장이나 확대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유럽정체성, 유럽시민권, 유럽통합, 문화적 인종주의, 다문화주의

I. 들어가는 말

2011년 2월 10일 프랑스 공중파 채널인 TF1에 출연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언은 유럽 정상들 사이에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32-B00005).

서는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0년 10월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독일식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발표했고, 2011년 2월 5일에는 캐머런 영국총리가 “서로 다른 문화가 독립해서 공존하는 영국식 다문화주의는 영국의 차이 안에서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선언하였다. 현재 세 나라의 정상들은 우파출신이다. 그리고 또한 세 나라 정상이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라는 것 역시 세 나라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다문화주의의 출발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보여주는 통합의 방식이고, 그러한 다문화주의가 유럽에서 보여지는 곳은 영국정도일 것이다.¹⁾ 독일이나 프랑스는 다분히 강한 통합주의 정책을 견지해 왔던 나라라는 점에서 그들의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은 ‘어불성설’이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통합주의 정책이 이민자 및 그들의 문화와 관련하여 충돌을 발생시키는 예는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유럽통합 그리고 냉전의 해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등 복합적 상황에서 이민자의 통합 문제는 개별 국가들에게는 주요한 사회문제이자 정치적 이슈였다. 전후 이민과 관련한 문제가 주요하게는 노동시장 및 주거 문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다면, 최근 이민자 문제는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 2월과 3월 ‘종교적 상징물을 학교 안에서 드러내 놓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여야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제 학교에서 히잡(이슬람 여성 머리가리개)이나 키파(유대교 남성용 모자) 혹은 커다란 십자가 등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독일에서도 1998년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 한 실업학교는 아프카니스탄계 독일 국적의 교사가 히잡을 착용하고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 자격을 박탈했다. 비록 연방헌법재판소는 히잡을 종교적 상징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된 것도 아니고 타의에 의한 강제적 착용이 아니므로 개인 신앙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지만, 히잡 문제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존재한다면 교사의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결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몇 개의 주에서 그러한 법안을 마련하였다. 벨기에 하원은 2010년 4월 29일 부르카와 니카브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프랑스에서 역시 유사법안이 통과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부르카, 니카브 등의 착용이 얼굴 확인을 어렵게 함으로써 테러방지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1) 독일은 배제모델(exclusionist model), 프랑스는 동화모델(assimilationist model), 영국은 다문화 모델(multicultural model)로 분류된다(Mitchell and Russell 1996).

이상의 몇몇 사례들은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혹은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 법안과 관련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유럽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들은 유럽을 ‘폐쇄된 기독교 집단’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80%의 이슬람교도들은 최근 위협과 차별을 느낀다고 조사되었다(Scott 2007, vii-viii). 그것은 2000년에 35%가 그렇게 느꼈던 것에 비교한다면 급속한 증가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2001년에 있었던 9·11 사건과 그 이후의 세계정세의 변화 속에서 더욱 강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실 현실을 일정하게 반영한 제도화된 법률들이 이러한 배타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현실은 훨씬 더 배타적일 수 있을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암스테르담 조약 그리고 구체적으로 유로(Euro)화를 출범시키는 시점까지 유럽연합의 통합의 방식은 그 내용을 충실히 다지는 듯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동진(東進)하면서 동유럽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양적인 확대를 해 나가면서 유럽연합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유럽연합의 질적 통합의 강화라기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한다는 비판과 함께—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 유럽헌법안이 부결되면서 약화된 방식의 정치적 통합 안을 제시한 리스본조약(2009년 12월 1일 발효)이 그나마 정치적 통합의 명분을 세웠을 뿐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경제위기는 그나마 위안을 삼았던 경제적 통합의 이점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구도 속에서도 유럽정체성의 문제는 불가피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것은 앞으로 유럽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보고자 하는 유럽시민권의 경우 현재는 결국 개별국가의 국적에 기반한 시민권의 문제로 한정되고 있다. 국민국가 시기 주권의 배타적 권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²⁾ 하지만 유럽 정체성을 논의 하면서 기존 국민국가의 민족주의는 문화적

2) 유럽시민권의 문제는 국민국가의 시민권을 넘어선 새로운 시민권의 형성을 둘러싸고서 제기 되는 문제이다. 국민적 동일성에 기반한 국민국가의 시민권의 한계는 분명 확인된다(Brubaker 1992; Kymlicka 2010; Joppke 1995).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과정 속에서 Hammer(1990)는 국가의 구성원을 시민권자(citizen), 영주권자(denizen), 외국인(alien)으로 구분하고, 그 중 일정기간 이상 장기 거주한 구성원에게 영주권자로서의 권리(denizenship)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문화적 시민권(Kymlicka 2008, 2010)을 주장하거나 좀 더 근본적으로 국적 개념을 넘어 개인에 기반한 시민권 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Soysal 1994; Castles and Davidson 2000). 세계화 시대 국민국가 시민권의 위상변화를 둘러싼 논의는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출현 속에서 시민권의 문제를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

인종주의로 전환되어 등장하면서 배제의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쟁점 중에서 유럽이라는 정체성, 유럽시민권 그리고 그 기저에 존재하는 문화적 인종주의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쟁점들은 두 개의 층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의 정체성, 시민권의 문제이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민국가 수준에서 쟁점이 되고 있으며 그것이 다시 유럽 차원으로 확장되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현실화되는 방식은 시민권이지만 그 이면에는 유럽의 정체성 형성의 논리와 또한 기저에 흐르는 문화적 인종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논리를 역으로 거슬러 우선 기저에 존재하는 문화적 인종주의를 II절에서 검토하고,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고 있는 유럽정체성의 문제를 III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후 IV절에서 제도화된 유럽시민권, 결국은 현재 독일과 프랑스에서 국민권과 시민권의 변화 및 그것을 둘러싼 최근 논의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V절에서는 현재의 논의를 넘어서 지향해야 할 유럽시민권의 방향에 대해 필자의 시각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II. 유럽의 문화적 인종주의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진 ‘네이션(nation)’이라는 공동체는 분명 일종의 허구적 또는 ‘상상의’ 공동체—역사적 기원에 대한 강조, 상징을 통한 정체성의 형성,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를 통한 동원 등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였다. 이 과정에서 ‘인민적 제도’로서 일반화된 학교는 모국어, 모국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언어적 공동체, 운명공동체라는 국민적 정체성을 만들어냈다(Balibar 1992; Balibar and Wallerstein 1990). 특히 히잡을 둘러싼 논쟁에서 보이듯이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정체성의 보루로서 학교는 결코 침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된다. 또한 인종관념의 상징적 핵심으로서 ‘혈통’은 민족공동체를 계급의 경계를 넘어 가상적으로 확대되는 상징적 혈연·학교를 통해 재생산되는 통시적 역사성—과, 친족관계에 근거하는 ‘가족공동체’—국민적 공동체의 기초 단위가 재생산 단위—로서 표상하게 된다. 민족주의는 이러한 방식으로 재생산되는 민족공동

다. 특히 국적을 넘어서는 개인에 기반한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장기적으로 시민권의 준거점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체의 동원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섭과 배제의 논리가 작용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민족적 공화주의’였으며, 좌우를 막론하고, 국가이익의 방어와 국가안전이라는 명목 속에서 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Balibar 1992).

유럽시민권 및 정체성 형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서 부각되는 현상이 문화적 인종주의이다. 국민국가 수준에서 국가적 통일성의 형성과 국민적 통합을 위해 내셔널리즘이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였다면, 유럽의 수준에서 문화적 인종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 인종주의는 단지 유럽의 각국 내에서 존재하는 극우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각국 정부의 개별 입법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구체적인 권력의 작동방식이다.³⁾ 국민국가 수준에서 민족주의가 국민적 정체성 형성의 중심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였듯이, 문화적 인종주의가 유럽정체성 형성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화적 인종주의는 198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유럽통합의 가속화라는 조건 속에서 새로운 포섭과 배제의 논리로서 등장하였다. 과거의 인종주의, 대표적인 것으로 고비노(Gobineau)의 인종주의가 문명론 혹은 생물학이라는 과학—물론 이 역시 사회적이며 동시에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인종주의이다—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다면, 최근의 인종주의는 문화적 인종주의라는 특징을 갖는다.⁴⁾ 그것은 인종주의의 현대적 현상이 문화적 타자성에 대한 거부와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문화적 인종주의는 타자를 전통, 민족, 종교, 언어, 역사 등의 기준을 통해 다른 집단으로 인종화하면서(racisant) 정의한다(Wieviorka 1992, 31). 문화적 차이라는 문제가 그 스스로 자율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동시에 사회적 관계 그리고 또한 공동체의 집단적 삶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문화적 차이의 문제는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개념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적 차이는 불평등, 지배, 착취, 차별 등의 관계를 내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근에 문화적 차이의 문제는 인종주

3) 최근 동유럽의 민족주의는 최근 서유럽의 극우민족주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즉 종교, 언어, 혈통, 관습 등 문화적 요소에 기초한 구별짓기를 시도하는 문화적 민족주의가 주요한 경향이다(정병권 외 2005). 사실 유고슬로비아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언어, 종교, 문화 관습의 구별을 통한 민족주의의 부활은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긍정적 모습보다는 끊임없이 타자에 대한 배제와 억압을 동반하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모습일 뿐이다.

4) 혹자는 이러한 현상을 ‘문화적 분리주의(cultural separatism)’라고 칭한다. 그것의 기저에는 비유럽문화에 대한 유럽문화의 우월성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이로부터 혼혈과 다문화에 대한 거부, 국가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도출된다(Evans 1996).

의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문명화된 프랑스적 가치에 대항하여 북아프리카인들의 가치는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범죄적인 것'들과 연관지어 설명된다. 인종주의 언어가 계급화되고, 젠더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족전선(Front National)에 의해 만들어지는 북아프리카 아랍남성의 이미지는 남자다움, 북아프리카 여성의 이미지는 다산성이며, 이러한 것들은 비문명화된 동북의 세계를 연상하도록 만들고 있다. 식민주의의 언어로 만들어진 상상의 타자이다. 또한 민족전선이 동원하는 인종주의적 언어는 계급의 언어와 연관되어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은 새로운 빈곤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Evans, 1996, 49-54). 사실 여부를 떠나 프랑스 혹은 넓게 유럽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왜곡되고 의도된 사회적 표상들이다. 이것은 이슬람교도와 이민자의 동일시 경향을 만들어내고, 이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슬람교도들이 사회적 배제의 대상에서 과잉이 대표되거나 일상적인 인종주의와 이슬람혐오증이 동일시된다(Roy 2007, 10-11). 그 이외에도 흔히 이야기되듯이 이슬람교도들과 테러리즘 집단의 동일시가 발생하고, 그 반작용으로 서구문명과 이슬람문명의 적대적 경향이 강조된다. 문화적 인종주의가 이러한 이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오류를 만들어내는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히잡은 다양한 사회적 표상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1989년과 1994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히잡 사건 당시 히잡은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의 시각에 두 가지를 표상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나는 히잡을 두른 여자 아이들은 이슬람의 전통적인 전근대성, 즉 여성의 종속을 표상하였다. 히잡은 억압받는 여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식이다. 히잡을 착용한다는 것은 원리주의자들에게는 단순한 개인적이고 고립적 표현의 양식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여성의 부차화된 지위를 드러내는 총체 속에 들어감을 의미한다(Pena-Ruiz 2003, 107). 히잡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련의 행위들의 양식 속에 위치한다. 히잡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이슬람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교육의 제한, 남편 선택권의 박탈, 외적인 권위에 의해 통제되는 성생활과 개인생활이다. 따라서 프랑스 사회라는 근대 문명화된 사회의 이름으로 그것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자 동시에 필요한 작업으로 간주된다. 히잡의 착용은 종교적 제스처일뿐만 아니라 남성지배 그리고 무슬림의 가부장적 질서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다(Jennings 2000, 584). 따라서 프랑스의 공화주의자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은 히잡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으로써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상징화하려 한다. 그러한 시각과 더불어 급진적 이슬람 정치의 상징이라는 시각이 부가된다. 9·11 이후

이슬람의 상징인 히잡이나 부르카 등은 테러리즘을 상징화하였으며, 최근의 부르카 금지법의 실행은 그것에 근거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동일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결합되어 존재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프랑스 및 유럽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유럽인의 시각에서 용인될 수 없었다.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근대성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것의 '악마성' 즉 그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이고, 정치적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당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⁵⁾

유럽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슬람문화는 명확한 대립항이자 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국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민족주의적 동원의 방식은 유럽적 차원에서 유럽 시민의 동원을 위한 새로운 메카니즘이 요구되면서 문화적 인종주의로 새롭게 전환되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럽적 역사의 새로운 구성과 유럽적 차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민족문화를 넘어선 유럽문화의 확정이라는 과제가 제기되고 구체화되고 있다.⁶⁾ 유럽문화의 확정이라는 문제는 두 가지 세력에 대한 대항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이민과 다문화주의가 “민족을 파괴하려고 고안된 더 큰 세계화 과정의 일부로서 민족들의 잔해 위에 영어권이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지구촌을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본다(한스 게오르크베츠 2004, 124). 이 과정은 새로운 전 지구적 제국을 건설하려는 미국인들과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전파되는 과정인 것이다. 우선 이슬람은 극우파들에 의해 서구문명과 서구적 가치를 구성하게끔 대비시키는 ‘타자’의 역할을 한다. 새로운 포섭과 배제의 기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립항으로서 설정되고 있는 것이 비유럽문화로서 ‘이슬람문화’이다.

9·11 테러 이후 지구적 차원에서 형성된 광범위한 반이슬람 분위기가 유럽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파키스탄인, 독일의 터키인, 그리고 프랑스의 알제리인 등이 유럽문화의 포섭/배제 과정에서 우선적인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 물론 ‘히잡’의 착용에 대한 이러한 견해에 대해 ‘히잡’이 갖는 적극적 의미 즉 저항의 상징, 혹은 젊은 여성의 자율성 등에 주목하여 보는 견해 등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Khosrokhavar 1997; Laurence and Vaisse 2007, 203).

6) 1957년 유럽공동체를 탄생시킨 로마조약이 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과 달리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공동체는 공통의 문화적 유산을 강조함과 동시에 회원국들의 민족적·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여 각국의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마스트리히트 조약 121조; 암스테르담 조약(1997) 151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1990년대 이래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문화 2000 프로그램’이다.

일국적 차원에서 극우세력들에 의해 시작된 문화적 인종주의의 담론은 유럽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것은 유럽의 정체성 그리고 제도적인 시민권의 문제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III. 유럽 정체성

유럽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 수준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하나는 유럽 자체의 정체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인의 정체성의 문제이다. 물론 이 두 개의 문제는 결합되어 있다. 유럽자체의 정체성 즉 어떤 유럽을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는 곧 유럽이라는 공간 내에 살아가는 유럽인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1. 어떤 유럽인가?

현재 유럽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는 유럽통합이 경제적 통합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사실 1980년대 유럽통합을 추동한 힘은 경제 메카니즘이었고, 유럽연합 내에 회원국들을 경제적으로 포섭함으로써 경제장벽을 철폐하고 거대한 내부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메카니즘의 영향은 더욱 더 많은 배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 세력을 강화시켜 왔다. 이로부터 유럽의 정체성 문제를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럽의 정체성 형성을 통해 공동의 가치와 경험을 가진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끊임없는 배제를 통해 공동체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본다(Hettlage 2004).

유럽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체성의 충돌과 갈등, 형성과 변화의 모습은 복잡하다. 기존 국민국가라는 시공간을 넘어 새로운 유럽이라는 시공간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 그리고 그 유럽의 정체성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사회 세력들의 갈등과 경쟁은 현 시점의 정치지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현재 유럽통합은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이후 유로화의 출범 등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듯하였지만, 유럽헌법 비준 거부, 경제 위기 속의 갈등 등에서 보였듯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정하게 일치하면서 경제적 통합을 중심으로

유럽이 급속히 통합되었지만, 이후 정치사회적 통합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유럽에 고유한 이미지,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예를 들어 1993년 코펜하겐 유럽이사회는 유럽연합 가입 희망국들에게 가입요건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유럽이사회가 그리는 유럽의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행, 그리고 소수민족의 존중과 인권의 보호, 둘째는 EU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구비, 셋째는 가입이후 연합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준수 의지 및 능력, 넷째는 정치적 공동체와 경제통화연합에 대한 지지, 다섯째는 연합의 추가회원국 수용 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등이다(박채복 2000, 71). 이러한 '유럽'의 기준은 흔히 이야기하는 서구중심주의(eurocentrism)의 표현이다(Taylor 2010; 홍태영 2011). 즉 프랑스혁명(1789) 이래 19세기 유럽에서 형성된 유럽적 가치들이 유럽연합이라는 틀을 통해 구현되는 방식인 것이다.

정치적 통합을 진행하는 요즘에 잦은 걸림돌을 만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 설명되지만 동시에 유럽의 정체성과 유럽에의 소속이 갖는 의미에 대한 불명확성 등에도 기인한다. 유럽통합을 주도했던 초국적 자본은 유럽을 네트워크 권력의 전형으로 간주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유럽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려 하지만, 이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적, 사회적 유럽이라는 정체성이 제시된다. 또한 다문화적 유럽에 대항하여 기독교적 유럽 역시 제시된다. 또한 유럽의 정체성에 대항하여 과거 국민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그 배타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경향 역시 존재한다. 극우 인종주의적 정당들이나 사회세력들의 성장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인종과 문화를 혼합하려는 세계화의 기획 혹은 유럽의 기획을 비난한다. 국민국가의 정체성은 더욱 더 민족적 정체성의 의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유럽의 정체성 역시 이슬람의 침투에 대항하여 기독교적 정체성이 강조된다. 하나의 획일적인 유럽의 정체성을 일순간에 형성될 수 없으며, 복잡한 논의와 분쟁을 거치면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체성을 둘러싼 논의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보다는 더 격해지는 경향을 지닌다는 것이다.

규범적 차원에서 유럽은 '민주주의적 유럽'이 되기를 희망하고 요구받는다. 민주주의와 인간의 권리라는 가치에 기반한 정체성이 유일하게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한 정체성으로 간주된다(Beck 1997; Camps 1992). 유럽정체성의 형성은 과거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국민문화 및 그에 의한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에서 나타났던 것과는 다른 방식, 즉 배제가 없

는, 그리고 공통의 적이 없는 정체성의 형성이어야 하기 때문이다(Delanty 1998). 하버마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공적 영역의 발달에 기대를 걸면서 공화주의적 헌법에 대한 “해석의 공통적 지평”을 통한 애국심을 기대하고 있다(Habermas 2000). 따라서 민주주의적 정체성만이 유일하게 보편적으로 유럽인들에게 의해서 수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열려진 정체성’이라고 강조된다. 하지만 그것은 원칙적 수준의 합의이자 출발점이며 논의는 계속 열려 있으며 유럽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유럽인을 누구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현실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과 ‘유럽인’에 대한 경제실정의 문제는 독립적이지만 상호 규정하는 문제들이다.

2. 유럽인의 정체성

진행 중인 유럽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더불어 유럽에 거주하는 유럽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유럽인의 정체성 문제는 유럽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국가의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된다. 국민정체성은 지속적으로 역시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인으로 인해 갈등을 발생시킨다. 일국 내에서 정체성의 갈등은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거대 공동체의 출현 속에서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낸다. 기존의 각 나라의 국민정체성이 유럽정체성으로 그대로 전이 혹은 확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국가 시기 국민 정체성은 공동체와 관련하여 거의 유일하고 지배적인 정체성이었다. 하지만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유럽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유럽인이라는 정체성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시민들에게 새로운 갈등의 여지를 만들어 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후 유럽과 관련한 조약들이나 규정들은 유럽정체성이 국민정체성과 동일한 수준에서 위치하기를 희망하였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정체성과 유럽정체성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럽통합이 개별 국민국가를 없애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유럽연합은 개별 회원국인 국민국가의 독립을 보존하는데 더 필수적일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유럽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이 상보적이라고 믿는다. 또다른 견해는 유럽통합이 개별 국민국가의 국민정체성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경쟁적이거나 배제적인 관계는 유럽통합이 개별 국민국가의 국민정체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유럽개별회원국 정부나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유럽통합에 대한 반대의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유럽정체성과 국민정체성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은 개별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Haller 1995). 예를 들어 1970년대까지 독재정치를 경험했던 남부 유럽국가들—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은 유럽연합이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또한 이들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도 유럽 연합이 자신들 나라의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에 스칸디나비아의 나라들—노르웨이, 스웨덴—은 안정적인 경제와 복지, 사회안전망 등 자기 나라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으로 유럽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노르웨이가 1992년 94년 두 차례에 걸쳐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한 경험이 있다. 반면에 독일은 자신들의 과거 때문에 유럽에 대해 더 애착을 갖는다. 따라서 독일인은 유럽인이 되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사람들에 비해 좀 더 애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바로 유럽정체성과 유럽인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임무이다.

오히려 유럽인의 정체성과 개별 회원국의 국민정체성의 관계 설정 속에서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회원국 내부의 이민자들의 정체성이다. 유럽 내에 존재하는 이민자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국민정체성, 그리고 출신국으로부터 오는 정체성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는 유럽인의 정체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유럽정체성의 문제를 통해 많은 나라들은 국민국가 내부의 정체성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유럽인이라는 정체성을 둘러싸고 문화적 인종주의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배제의 논리가 강해지고 있다.

프랑스의 이민사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 이민의 물결은 19세기 동안 진행된 산업의 성장 시기에 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 유입된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Bernard 1993). 두 번째 물결은 전쟁을 통해 상실된 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로 이탈리아와 동유럽으로부터 왔다. 세 번째 물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영광의 30년'이라는 호황기에 부족한 노동인력을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주요하게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또한 알제리 전쟁이 끝나면서 광범하게 이민노동자들이 유입된다. 이민이 유럽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 정체성 형성에 큰 갈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적 측면에서 프랑스 정체성으로의 편입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아프리카로부터의 이민의 경우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민 3세대에 이르러 그 갈등은 급격히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아랍 출신 이슬람 이주민들의 경우 그들의 활동방식이나 권리 요구의 내용의 측면에서 불

때, 1960년대 이후 3개 세대로 나뉘어진다고(Weil 1992).⁷⁾ 제1세대는 1960~70년대로 이슬람 이주민들의 요구는 주로 이민자들의 기본적 권리의 요구였다. 비자나 체류증 요구,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한 요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2세대는 1980년대 주로 인종주의와 그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다. 1980년대는 프랑스에서 극우정치세력인 민족전선이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였다는 점도 그와 관련된다. 3세대 운동은 종교적이거나 공동체적 차원에서 권리의 요구이다. 1989년 히잡 사건이 계기일 수 있으며, 종교적, 문화적 권리의 요구이자, 이슬람공동체의 인정이라는 다문화주의적 요구와도 연결된다.⁸⁾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주의적 권리의 요구가 국민국가 수준에서 쉽게 용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적 차원에서 용인되기는 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오랜 기독교적 전통을 통해 형성된 기독교적 유럽이라는 정체성이 강조되면서 이슬람정체성에 대한 대립항이 설정되고 있다. 일부 독일 학자들이 제시하는 유럽적 가치 기준에는 고대철학, 기독교, 계몽주의, 교육에 대한 인문주의적 이념 등이 존재한다(Hettlage 2004). 로마의 교황청 역시 유럽헌법에 기독교성이 기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 내에 존재하는 이슬람 혹은 아랍인들의 정체성 문제는 국민국가적 수준뿐만 아니라 유럽적 수준에서 새롭게 사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민 2~3세대들의 경우가 일종의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서 국민권(nationalité)과 정체성(identité)의 괴리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민 2~3세대들의 경우 유럽지역에서 해당국의 국민교육을 받으면서 개별 국민국가의 시민으로 성장해 왔지만, 그들은 사회에 진출할 시기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진정한 국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⁹⁾ 프랑스에서 국적을 선택할 나이인 16세에 프랑스 국적을 선택하면서 행하는 '국민의지 선

7) 프랑스 이민사와 관련하여 1980년대 이후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통합의 원칙과 그 정책들에 대해서는 홍태영(2010) 참조.

8) 유럽적 차원에서 이민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단체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NGO로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250여 개 NGO를 연결하는 Starting Line Group과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서 독일과 프랑스에 거주하는 터키와 모로코 이민자들의 집단인 Migrant's Forum이 있다. 이들의 경우 이민자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Geddes and Guiraudon 2004; Waters 2004).

9) 예를 들어 프랑스의 실업율이 10%에 육박하고 있는데, 20대의 실업율은 두 배인 20%에 이른다. 하지만 이민 2~3세대의 실업율은 그 두 배인 40%를 넘는다는 통계가 제시된다. 빈곤의 악순환에 따른 교육기회의 박탈, 취업기회의 박탈 등은 그들이 프랑스 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기에 이른다.

인(manifestation de volonté)'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Ribert 2006, 238).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부모의 출신국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명확히 부여받는 것도 아니다.

프랑스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학교에서 히잡의 착용 문제는 단지 프랑스 정체성이나 이슬람 정체성이나의 문제로 양분되는 것은 아니다.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통합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프랑스인이자 동시에 이슬람인(franco-musulmanes)'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Khosrokhavar 1997). '공적으로' 프랑스인이고, '사적으로' 이슬람교도라는 존재가 아니라 이슬람-프랑스인 혹은 프랑스인-이슬람교도로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자신의 지역적 정체성, 즉 출신지가 알제리 혹은 모로코, 튀니지라는 사실을 넘어서 이슬람-프랑스인으로서 존재를 드러내고자 함이다. 이러한 이슬람화는 동화(assimilation)를 거부하지만 통합(intégration)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즉 이슬람인으로서 동시에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것이며, 그것에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다중적인 정체성의 문제, 혹은 국민국가 시기 시민권의 전제가 되는 국민정체성의 의미의 약화 내지는 부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프랑스에 사는 알제리 3세대 혹은 4세대의 경우 내지는 독일에 사는 터키인 3세대 혹은 4세대가 프랑스나 독일 사회의 진입 장벽에 막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편입되지 못하면서 부모 혹은 조부모 세대의 정체성인 터키나 알제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이슬람정체성에 강하게 애착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유럽시민권을 획득한다. 이 경우 국민국가 시기에 결합되어 있던 국민정체성과 시민권이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된다.¹⁰⁾ 이민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주요하게 이슬람정체성을 통한 유럽정체성과의 결합을 사고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유럽이 그간 갈등의 요인이었던 이슬람적 정체성의 이민자들을 유럽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비록 국민국가 수준에서는 다문화주의의 거부를 통해 배제해 왔던 이슬람적 정체성을 이슬람-유럽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을 통해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유럽정체성이 유럽국가들의 정체성의 합이 아니라 제3의 정체성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슬람 정체성과 유럽정체성의 결합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유럽이 국민정체성과

10) 유럽통합은 일국적 수준에서만 본다면 일종의 국민국가의 위기이다. 그것은 “사회를 보호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국민국가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국민정체성의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개인의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온다”(Jenkins and Copsey 1996, 119)는 것이다.

같은 단일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듯이 다문화적 정체성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국가에서 등장하는 정체성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IV. 유럽시민권

유럽시민권 문제는 문화적 인종주의, 유럽(인) 정체성의 구체적인 표현이자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유럽 형성의 복잡함을 내재하고 있다. 시민권의 문제는 단순히 권리의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됨'의 문제 즉 시민으로서의 덕목과 행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등의 정체성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한다. 역사적으로 "시민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포섭과 배제의 동학이 작동하는 경계가 존재하며 정체성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이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 즉 정치적 활동, 공동체의 방어, 종교적 행사 등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시민이 된다는 것 즉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것은 단지 권리를 얻는다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의 삶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과 결합되어 있었다.

근대 국민국가 시기에 시민권은 국민정체성과 결합되었다. 국민국가에서 시민권은 국민권(nationality)을 전제로 해야 했기 때문에 시민권과 국민권 사이의 관계는 호환적이고 상호의존적이었다. 하지만 정체성과 관련한 경우 시민권의 문제에 있어서 괴리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독일의 터키인이나 프랑스의 알제리인은 각각의 나라에서 국민권을 획득하면서 시민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국적이 주는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출신국으로부터 오는 종족적(ethnic) 및 종교적 정체성 즉 문화적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앞서 보았듯이 그러한 갈등은 이민 2~3세대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어려움 등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유럽 시민권 부여를 둘러싸고 문제가 더 복잡해진 듯하다.

1984년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조약안'을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유럽시민권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회원국의 시민은 그 자체로서 연합의 시민이다. 연합의 시민권은 회원국 시민권의 자격과 연결되어 있다. 연합의 시민권은 따로 획득하거나 상실할 수 없다. 연합의 시민은 이 조약이 규정한 형식에 따라 정치에 참여하며, 연합의 사법적 질서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누리고 연합의 규정을 따른다." 이러한 규정은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반영되었고, 나아가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시민권의 내용을 좀 더 풍부히 하고자 하

였다(유럽연합조약 8조). 우선 기존의 경제적 행위자로서 시민에 한정되었던 로마조약이래의 시민권을 풍부히 하여 유럽연합 시민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 선거와 유럽의회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였으며, 유럽의회에 청원을 내고 유럽의회에서 임명하는 옴부즈만—유럽연합 기관의 행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에게 소원을 제출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7년의 암스테르담 조약은 유럽연합의 정치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의회를 강화하였고, 유럽시민권 개념 역시 확대하였다. 우선 '자유, 안전, 정의'라는 공간 그리고 '내부국경선이 없는 공간'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보충되었다(Meehan 2000; 조홍식 2005; 온대원 2003).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설정한 '내부의 국경선이 없는 공간'이라는 개념과 '자유, 안전, 정의'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현재 유럽연합의 시민권 개념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경계의 제거와 함께 외부적 장벽의 공고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1970년대 이후 프랑스가 그러했듯이 외부의 경계를 강화하면서 비유럽인들의 유럽 이민을 봉쇄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유럽시민권의 전제조건이 회원국의 시민이라는 점에서 결국 귀결되는 문제는 유럽의 회원국이 시민권을 어떻게 부여하는가이다. 즉 유럽연합의 개별 국민국가가 국민권(nationality)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유럽의 시민권(citizenship)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그리고 쉥겐 협정¹¹⁾ 등을 고려하면서 각국의 시민권 부여에 일정한 조율을 거쳐 왔다. 예를 들어 강한 속인주의 원칙의 독일과 강한 속지주의 원칙의 프랑스는 서로 자신의 원칙을 약화시키면서 반대의 원칙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유럽시민권 부여에 있어서 형평성을 찾으면서 수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Weil and Hansen 1999).

독일의 경우 1913년 제정된 제국국적법(Reichsund Staatsanghörigkeitsetz)에 명시된 속인주의 원칙—시민권은 독일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경우에 부여된다—이 2000년 국적법 개정까지 유지되었다(고상두·하명신 2010).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11) 쉥겐 협정은 1985년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3국 사이에서만 별도의 여권심사 없이 국경을 공유한 협정이었는데, EU 조약안에 편입되면서 현재 EU 회원국 사이 국경철폐와 출입국 수속을 없애기 위한 조약으로 발전하였다. EU 회원국 간 인력이동의 자유에 따른 테러, 마약, 불법이민 등의 범죄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쉥겐 정보시스템을 가동하여 경찰과 사법기관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하며 기존 국적을 포기하고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반면 귀환동포 특히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통일 이후 독일계 후손은 조건없이 국적을 허용하여 그 수가 약 250만 명에 달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동유럽난민 문제 및 유럽통합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와 결합하면서 이러한 국적법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다. 그에 따라 정당 간 및 정당 내부의 갈등 등 우여곡절을 거친 후 개정된 2000년 1월의 개정국적법에 따르면, 그 간의 속인주의 원칙에 속지주의 원칙을 결합하였다. 부모 중 1인 이상이 8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최소 3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외국인의 출생자녀는 독일시민권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중국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국적취득의 조건을 완화하여 국적취득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과거 15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였다. 하지만 복지급여와 실업수당 없이 생활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독일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와 함께, 2005년 이민법은 국적취득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통합교육과정과 국적 취득 테스트를 통해 이민자들의 독일사회에의 통합의 노력을 강화하였다. 통합교육 과정에 따르면 600시간의 독일어교육과 독일의 문화, 역사, 법규 등에 관한 30시간의 교양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민자들에게 독일 사회의 기본 가치를 이해시키고 독일어 언어능력을 배양시켜 내국인과의 자유로운 소통,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 그리고 궁극적으로 독일사회로의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국적테스트를 통해 이민자들에게 독일의 역사, 문화, 헌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는 2006년 1월부터 외국인이 독일 시민권을 신청할 때 심성테스트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테스트는 “종교를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책이나 영화가 있다. 이것으로 인해 모욕감을 느낀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겠는가?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성은 맞아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딸이 다른 신앙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려 한다.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9·11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테러리스트인가 자유의 투사인가?” 등으로 이루어진 30문항의 국적 취득 심사를 위한 설문지이다(이철용 2007, 328). 심사의 대상은 이슬람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제한되어 있어 소위 “무슬림 테스트”라고 불린다. 응시자의 답변이 독일 시민이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적 취득은 거절당할 수도 있다. 질문이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묻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이슬람 문화에 대한 비하를 담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대비되어 유럽의 통합과 관련하여 프랑스 이민정책과 국적법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그것은 유럽통합이 점점 무르익으면서 유럽 내부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유럽 외부와의 경계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이다. 프랑스 이민정책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 속에서 과거 식민지로부터 대대적인 노동력이 유입되었고, 그에 대해서 프랑스연합(Union française)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프랑스 제국주의를 대신해서 프랑스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연대관계를 재정립하는 체제를 확립시켰다. 그리고 프랑스연합법에 따라 프랑스연합의 시민은 인종과 종교의 차별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명기하였다(박지현 2008). 하지만 1958년 알제리 독립 전쟁의 시작과 함께 프랑스연합은 붕괴되고 프랑스 연합의 시민권을 가졌던 알제리인을 포함한 구식민지인들은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경제불황의 시작은 프랑스 정부로 하여금 “이민제로” 정책을 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어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1970년대 서유럽국가 9개국의 노동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보장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후 30년의 영광과 전통적 자유주의적 기초를 반영하고 있던 1973년의 프랑스 국적법에 따라, 국적 체계에 있어서 남녀평등, 적자와 사생아의 평등, 본토와 해외영토의 국적권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인부모에게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는 성년에 프랑스나 프랑스 국적부여 혹은 획득이 가능한 영토나 나라에서 연속적으로 5년째 거주하고 있다면, 공식절차 없이 프랑스 국적을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1993년 국적법(*loi Méhaignerie*) 개정과 함께 변화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에게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는 16세에서 21세 사이에 ‘의지선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에는 프랑스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국적 부여 요건을 강화하면서 ‘젊은이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을 획득해서는 안 되며, 또한 국적 취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랑스국적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이다(Ribert 2006, 16). 따라서 국민정체성의 확실한 확보와 자신의 조국에 대한 심도있는 애착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1993년 법에서는 이민 2세대가 국적을 얻기 위한 일정한 조건—16세 이전에 5년의 거주 그리고 프랑스국적 선택 시 자신의 의지를 프랑스어로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하였고, ‘의지 선언’ 조항은 ‘이민 2세대’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러한 국적법과 함께 우파 대통령인 시락과 현 대통령인 사르코지가 내무장관 시절에 입안된 이민법들은 프랑스의 국경을 더욱 강화하였다(박선희 2008). 당시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2003년법을 통해 단기체류비자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불법이민자들의 격리

나 송환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지문전산화 작업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2006년의 사르코지법은 '선택이민 수용' 원칙을 강화하였다. 우선 가족이민의 조건을 강화하여 과거 1년의 조건을 18개월로 연장하였고,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수령자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선택이민을 위해 '능력과 재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사르코지는 "이민, 통합, 국민정체성 및 연대개발부(Minist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solidaire)"를 창설하여 이민, 사회통합 및 정체성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초대 이민부 장관이 오르트퓌(Hortefeux)는 2007년 법을 통해 가족 재결합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120%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이민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장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초대 이민부 장관에서 내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오르트퓌는 2010년 7월 말 집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추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는 2010년 10월 말까지 프랑스에 있는 300여 개 집시 집단거주 캠프의 절반이상을 철거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집시들을 출신지국가로 추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약 2만 명가량의 집시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대도시 외곽 불법 캠프 촌에 거주하면서 사회불안요소가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가들과 노동조합, 좌파 정당들의 연대는 전국적 시위를 통해 정부의 외국인 혐오증 정책 폐지를 요구하였고, 국가인종주의(racisme d'Etat)라는 표현을 통해 정부정책을 규탄하였다. 유럽의회 역시 9월 9일 프랑스 정부의 집시추방정책을 비난하는 좌파정당 주도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단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유럽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다.

이것이 유럽시민권의 현주소이다. 유럽은 국민국가들의 연합이며, '국민들의 유럽'인 것이다. 아직까지 시민권이 주권의 배타적 권한이며, 유럽은 그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있을지라도 어떠한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정책의 문제는 결국 개별 국민국가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시민권의 부여는 고유한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유럽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개별 국가들 간의 차이를 조율하고 있지만, 앞서 보이듯이 방향성은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합의 속에서이다. 그러하다면 유럽시민권의 문제는 단순히 기존 국민국가 시기의 시민권의 연장이나 확대라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보다 민주주의적인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V. '시민들의 유럽'

어떤 사람을 시민으로 즉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곧 그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근대의 국민국가를 넘어서 유럽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는 현재, 새로운 시민권, 새로운 정체성의 문제는 형식적 차원을 넘어서 유럽의 새로운 내용을 채우는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문화적 인종주의는 유럽의 민주주의에 역작용을 하고 있다. 국민국가 형성기에 민족주의는 새롭게 형성되는 공동체의 통합이데올로기로서 내부적 통합과 외부와의 경계를 강화함으로써 내부의 민주주의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 즉 시민을 국민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작업은 시민의 권리의 확장의 과정에 맞물려진 과정이었고, 그것을 통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외부와 경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국민국가 내부에 외부를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국민국가라는 물리적 경계 내에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국가의 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외부인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민자들이며, 더구나 그들이 문화적으로 기존 국민국가 내에 편입되기를 거부할 때 더욱 심각한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의 이동은 물론 노동력의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인종문제는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과정에서도 이민노동자와 이들의 문화적 권리의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월러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의 대명사와 같은 전통의 장소에서 '노동자'가 형편없는 급료를 받고 정치적·사회적 권리에서 소외된 1848년 이전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 있을 것이다. 서양노동자들은 또다시 "위험한 계급"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피부색은 바뀌어 있을 것이며, 계급투쟁은 인종투쟁이 될 것이다. 21세기의 문제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될 것이다"(Wallerstein 1995, 47). 이러한 월러스타인의 지적은 현재의 유럽에서는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며, 한국 사회 역시 곧 현실이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규범적 수준에서 권리의 문제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모든 인간의 시민됨을 말해야 한다. 즉 모든 인간은 그들이 어디에 존재하건, 즉 그들의 국적을 불문하고 시민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렌트가 언급하였던 "권리들에 대한 권리(droit aux droits)"에 대한 접근가능성으로서 권리의 보편성의 실현이다(Arendt 2006). 그러할 때 배타적 정체성에 기반한 권리가 아닌 '권리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가능해 진다(Rancière 2007, 111). 그것은 자신의 '존재양식'에 대한 공동체 내

에서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즉 공동체의 권력이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들어오려는 개인의 존재방식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역시 자신의 존재방식을 공동체로부터 승인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정체성의 정치'이다.

최근 유럽통합은 정치적 의미보다는 경제적 요인 즉 자본이 주도하는 형태가 되면서 자본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시민권에 있어서도 기존의 자유권 및 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중요하게 되었다(Schnapper 1998, 414). 유럽 연합 내에 이동하는 회원국의 시민들은 국경을 넘더라도 유럽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 들어온 독일 국적의 시민은 프랑스에 있으면서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프랑스 의회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정치적 권리를 제외한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시민과 비시민의 구별이 노동과 거주 권리를 갖고 있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시민과 외국인—데니즌(denizen)¹²⁾—과 임시고용과 불법체류 외국인 사이의 구별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즉 경제적, 사회적 삶에의 참여가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집단에의 소속감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오히려 새로운 시민권이 기반이 되고 있다. 유럽 통합이 정치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집중하면서 유럽시민의 상 역시 경제적, 사회적 권리, 노동의 자유, 성별격차의 해소,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이라는 틀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상(像)은 경제적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정체성의 반영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민됨'은 권리의 향유 이상의 것, 즉 시민으로서의 덕성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 및 소속감, 더 나아가 자유의 공간에 대한 사랑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럽 시민의 상에 대한 민주주의적 구성을 통한 유럽정체성의 새로운 구성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문화적 인종주의에 대한 거부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럽의 건설은 국민국가가 부과한 국경을 무너뜨리면서 국민의 경계를 넘어 유럽시민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의 조건으로 국적(nationalité)이 아닌 거주(résidence)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Le Cour Grandmaison 1993)이나 시민권의 조건으로 국적이 아닌 거주지 나아가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공간으로 거주자 중심의 도시를 새롭게 사고하자는

12) 햄머(Hammar)의 표현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이민자들을 일컫는다(Hammer 1990).

주장(Isin 2000)이 존재한다. 또한 퍼셀(Purcell)은 시민권의 '스케일 조정(rescaling)'을 통해 국가 중심의 시민권의 범위가 한편으로 국가를 초월하는 초국적 범위로 확대되고 다른 한편으로 한 국가 내 하위단위인 지역이나 도시단위로 축소될 필요성을 제기한다(강현수 2010, 111-112). 현실적으로 유럽의 도시(city)가 유럽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유럽의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실험실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Grainger and Cutler 2000). 글로벌 시티에 근거한 시민권의 사고는 국민 국가의 전환을 통한 유럽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유럽시민권의 새로운 방식을 가능케 한다. 원래의 출신국으로부터 오는 정체성과 더불어 거주지로부터 오는 정체성에 근거한 시민권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유럽의 시민권은 일종의 초국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다중적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초국민주의(transnationalism)에 근거하게 된다(Kastoryano 2005). 초국민주의는 민족주의가 영토성을 벗어나 발생하는 현상이다. 유럽시민의 정치적 참여는 기존의 국민국가적 영토 개념을 벗어나 이루어지면서 유럽이라는 새로운 영토성을 만들어내면서 이루어진다. 이제 '초국민적 정치적 주체'의 형성을 구상할 수 있다(Balibar 2001, 255-256). 초국민적 주체의 경우 기존의 국민(성)과 문화의 탈구 현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혹은 이민의 활성화 속에서 이중 국적 내지는 다중적인 국민정체성 혹은 다문화적 정체성의 형성과 이것들의 유럽 내부에서의 수용이 필요하다(Delanty 2000; Dijkstra et al. 2001). 사회적 통합 역시 국민국가 시기와 같이 문화정체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등과 권리의 향유, 그리고 정치적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삶으로부터 제기되는 권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체성 역시 거대한 유럽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배제를 행하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동시에 물리적인 경계를 허무는 방식이다. 국민국가라는 공동체가 전환을 맞으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추구해 간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인간의 권리의 확장의 계기가 될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 민주주의 확장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유로운 인간들의 시민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유럽이야말로 기존의 국민 국가들의 연합으로서 '국민들의 유럽'이 아니라 '시민들의 유럽'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투고일 2011년 3월 20일

심사일 2011년 3월 28일

게재확정일 2011년 5월 16일

참고문헌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서울: 책세상.
- 고상두·하명신. 2010. "다문화시대 독일의 시민권 변화." 『국제정치학논총』 50집 1호.
- 박선희. 2008. "프랑스이민정책과 사르코지(2002~2008년)." 『국제정치학논총』 50집 2호.
- 박지현. 2008. "프랑스이민법을 통한 EU의 유럽시민권에 대한 역사적 진단." 『서양사학연구』 19집.
- 박채복. 2000. "동유럽 국가의 EU 가입과 유럽연합의 대응." 『유럽연구』 1권.
- 온대원. 2003. "EU확대와 유럽시민권: 단일정체성 형성과 통합의 전망." 『유럽연구』 17권.
- 이철용. 2007. "독일의 '문화전쟁'과 이민자 문제." 『한독사회과학논총』 17권 1호.
- 정병권 외. 2005. 『동유럽·발칸, 민주화와 문화갈등』. 서울: 한국외국대학 출판부.
- 조홍식. 2005. "유럽통합과 유럽시민권의 형성." 『국제지역연구』 9권 3호.
- 홍태영. 2010. "공화주의적 통합과 프랑스 민주주의." 『사회과학연구』 18집 2호.
- _____. 2011. "유럽적 근대성과 유럽적 가치의 형성." 『아태연구』 18권 1호.
- 한스-게오르크베츠 저. 지주형 역. 2004. "서유럽에서의 외국인 혐오, 정체성 정치, 배제적 인민주의." 『정체성 싸움, 서구의 인종주의』. 서울: 미세기.
- Arendt, H. 이진우·박미애 역. 2006. 『전체주의의 기원』 1. 서울: 한길사.
- Balibar, E. 1992. *Les frontières de la démocratie*. Paris: La découverte.
- _____. 2001. *Nous, citoyens d'Europe? Les frontières, l'Etat, le peuple*. Paris: La découverte.
- Balibar, E. and I. Wallerstein. 1990. *Race, nation, classe. Les identités ambiguës*. Paris: La découverte.
- Bernard, P. 1993. *L'immigration*. Paris: Le Monde-Éditions.
- Beck, U. 조만영 역. 1997. 『지구화의 길』. 서울: 거름.
- Brubaker, R.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s, V. 1992. "L'identité européenne, une identité morale." J. Lenoble and N. Dewandre. *L'Europe au soir du siècle*. Paris: Editions Esprit.
- Castles, S. and A. Davidson, eds. 2000. *Citizenship and Migration: Globalization and the*

- Politics of Belonging*. New York: Routledge.
- Delanty, G. 1998. "Redefining Political in Europe Today: from Ideology to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Beyond." U. Hedetoft, ed. *Political Symbols, Symbolic Politics. European identities in transformation*. Vermont: Ashgate.
- _____. 2000. "Social Integration and Europeanization : The myth of Cultural Cohesion." R. Harmsen and Th. M. Wilson, eds. *Europeanization: Institution, Identities and Citizenship*. Amsterdam: Ed. Rodopi.
- Dijkstra, S., K. Geuijen, and A. de Ruijter, 2001.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 No. 1.
- Dominelli, L. 2005. "Reconsidérer «l'autre»: l'exclusion et l'immigration dans l'Europe élargie." M. Boucher. dir. *Discriminations et ethnicisation. Combattre le racisme en Europe*. Paris: l'aube.
- Evans. M. 1996. "Languages of racism within contemporary Europe." B. Jenkins and S. A. Sofos, eds. *Nation and identity in contemporary Europe*. London: Routledge.
- Ferry, J. M. 1998. "L'Etat européen." Kastoryano, R. dir. *Quelle identité pour l'Europe*.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 Geddes, A. and V. Guiraudon. 2004. "Britain, France and EU Anti-Discrimination Policy: The Emergence of an EU Policy Paradigm." *West European Politics* 27. No. 2.
- Grainger, H. and R. Cutler. 2000. "The European City — A Space for post-national citizenship." R. Harmsen and Th. M. Wilson, eds. *Europeanization: Institution, Identities and Citizenship*. Amsterdam: Ed. Rodopi.
- Habermas, J 저. 황태연 역. 2000. 『이질성의 포용』. 서울: 나남.
- Haller, M. 2004. "Voiceless Submission or Deliberate Choice? European Intergration and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and Identity." H. Kriseai, K. Armingeon, H. Siegrist, and A. Wimmer, eds. *Nation and National Identity. The European Experience in Perspective*. Indiana: Purdue University Press.
- Hammer, T. 1990. *Democracy and the nation-state: Aliens, Denizens and Citizens in the world of International Migration*. Aldershot: Avebury.
- Hettlage, R. 2004. "European Identity — Between inclusion and exclusion." H. Kriseai, K. Armingeon, H. Siegrist, and A. Wimmer, eds. *Nation and National Identity. The European Experience in Perspective*. Indiana: Purdue University Press.
- Isin, E. F. 2000. "Introduction: democracy, citizenship and the city." E. F. Isin, ed. *Democracy, Citizenship and the Global City*. London: Routledge.

- Jenkins, B. and N. Copesey. 1996. "Nation, nationalism and national identity in France." B. Jenkins and S. A. Sofos, eds. *Nation and identity in contemporary Europe*. London: Routledge.
- Jennings, J. 2000. "Citizenship, Republicanism and Multiculturalism in Contemporary Fr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 No. 4.
- Joppke, Ch. 1995. "Toward a New Sociology of the State: On Roger Brubaker's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Archives Européennes de Sociologie* 36. No. 1.
- Kastoryano, R. 2005. "Citizenship, nationhood, and Non-territoriality: transnational participation in Europe."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8. No. 4.
- Khosrokhavar, F. 1997. "L'universel abstrait, le politique et la construction de l'islamisme comme forme d'alterité." M. Wieviorka. *Une société fragmentée?* Paris: La découverte.
- Kymlicka, W. 저. 장동진 역. 2008.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서울: 동명사.
- _____. 황민혁 역. 2010. 『다문화주의적 시민권』. 서울: 동명사.
- Laurence, J. and Justin Vaïsse. 2007. *Intégrer l'islam. La France et ses musulmans: enjeux et réussites*. traduits de l'anglais par J. M. Dreyfus. Paris: Odile Jacob. et al.
- Le Cour Grandmaison, O. 1993. "Immigration, politique et citoyenneté: sur quelques arguments." O. Le Cour Grandmaison et C. Wihtol de Wenden, dir. *Les étrangers dans la cité. expériences européennes*. Paris: La découverte.
- Meehan, E. 2000. "Europeanization and Citizenship of the European Union." R. Harmsen and Th. M. Wilson, eds. *Europeanization: Institution, Identities and Citizenship*. Amsterdam: Ed. Rodopi.
- Mitchell, Mark and Dave Russell. 1996. "Im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nation-state in the new Europe." *Nation and identity in contemporary Europe*. London: Routledge.
- Pena-Ruiz, H. 2003. *Qu'est-ce que la laïcité?* Paris: Gallimard.
- Rancière, J 저. 양창렬 역. 2007.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 서울: 인간사랑.
- Ribert, E. 2006. *Liberté égalité carte d'identité. Les jeunes issus de l'immigration et l'appartenance nationale*. Paris: La découverte.
- Roy, O. 2007. "Préface." J. Laurence and J. Vaïsse. *Intégrer l'islam. La France et ses musulmans: enjeux et réussites*. Paris: Odile Jacob.
- Schnapper, Dominique. 1998. *La relation à l'autre. Au coeur de la pensée sociologique*. Paris: Gallimard.
- Scott, J. 2007. *The politics of the veil*.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P.
- Soysal, Y. N. 1994. *The limits of Citizenship*.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aguieff, P.-A. 1994. *Sur la nouvelle droite*. Paris: Descartes & Cie.
- Taylor, Ch 저. 이상길 역. 2010. 『근대의 사회적 상상』. 서울: 이음.
- Wallerstein, I. 1995. "Response: Declining States, Declining Rights?"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47.
- Waters, S. 2004. "Mobilizing against Globalization: Attac and the French Intellectuals." *West European Politics* 27. No. 5.
- Weil, Patrick. 1992. *La France et ses étrangers. L'aventure d'une politique de l'immigration 1938-1991*. Paris: Calmann-Lévy.
- Weil, Patrick. et Randall Hansen. 1999. "Citoyenneté; immigration et nationalité: vers la convergence européenne?" P. Weil et R. Hansen, dir. *Nationalité et Citoyenneté en Europe*. Paris: La découverte.
- Wieviorka, M. 1992. "Culture, société et démocratie." In M. Wieviorka. *Une société fragmentée?* Paris: La découverte.

ABSTRACT

European Citizenship, Identity and Cultural Racism: Transformation of Nation-State and Extreme-Right Nationalism

Tai-Young Hong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European identity, European citizenship and cultural racism, which are important problems in the formation of European Union. These become important issues in the two instances. Identity and citizenship are, first, issues of nation-state and, at the same time, working in the instance of Europe. Although citizenship is an institutional formula, European identity is a base and cultural racism is discovered in these formations. After all, these problems are related with democracy of nation-state, which must be enlarged in the level of Europe. Citizenship is an exclusive right of nation-state, and Europe cannot carry regulation power. Immigration policy is an own problem of nation-state, because granting of citizenship is a peculiar area of sovereignty. Although European states coordinate their citizenship policy for equity, its direction is to raise their wall of entrance. Therefore, European citizenship is not to extend national citizenship but to convert it into a problematic one.

Keywords: European citizenship, European identity, European Union, cultural racism, multiculturalism